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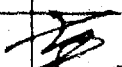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훈령

발령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법무 11360-1170
 시행일자 1993. 7. 13
 경유 (제 1 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 제목 훈령발령

취급		시	장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 담당관			
법 제 계 장			
기안	박상영 		
			협조

1. 인사12149-1491(93. 7. 6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여행규정중개정규정안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훈령안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공보관

참조 : 공보1담당관

제목 :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여행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22/ 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기획관리실장 전결)

(제 3 안)

수신 : 인사과장

제목 : 훈령발령 통보

1. 인사 12149-1491(93. 7. 6)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여행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1993. 7. 20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22/ 호(생략)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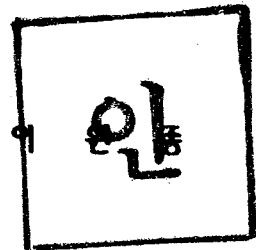
법무담당관

서울특별시 공무원급여명규정중 17항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 93 년 7 월 20 일

서울특별시 장



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여행규정^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제2호중 “국제기술협력규정”을 “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”으로 한다.

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 제2호의 질병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단한 결과 국내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정되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